

일본의 중소기업 정책의 시사점

-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Japan

곽 관 훈*

Kwak, Kwan-Hoon

목 차

- I. 서론
- II.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제도
- III.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시사점
- IV. 맺음말

국문초록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도의 도입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초과이익공유제도,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제도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이 논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들이 기대처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논문접수일 : 2011.09.30

심사완료일 : 2011.10.26

게재확정일 : 2011.10.28

* 법학박사·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제도와 비교가 가능한 일본에 있어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 하도급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을 들 수 있다. 동 법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법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등 사후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도급거래,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및 규제의 기본방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 중소기업,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과잉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초과이익공유제 등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제안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도 많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전제 하에서 중소기업 을 보호하고 기술탈취 등의 부정행위를 행하는 대기업을 엄격하게 제재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 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통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i) 하도급대금 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ii) 하도급대금 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30조 1항) 및 (iii)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도들이 기대처럼 중소기업 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을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스스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이처럼 적대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과연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제도와 비교가 가능한 일본에 있어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그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는 하도급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일본의 중소기업관련 법제도

1. 의의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설립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회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은 소규모의 비공개회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¹⁾ 종전의 상법이 공개회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도제한회사를 예외로 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²⁾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일본의 경우 200만이 넘는 기업 중에 공개회사는 약 3,00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회사가 비공개회사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즉, 회사법의 최대 수요자가 비공개회사라는 점을 염두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이다.³⁾

아울러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을 두고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을 들 수 있다. 동 법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대동소이하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법의 경우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등 사후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하도급거래,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및 규제의 기본방향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에 관한 규제

(1) 규제의 개요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하청대금

1) 예를 들어 신회사법은 모집사항의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제199조 2항·제309조 2항 5호), 공개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는 취지의 특칙을 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제201조 1항).

2) 高田 剛 外, 「非公開會社のための新會社法」, 商事法務, 2005, 3面.

3) 江頭憲治郎 外, 「特輯會社法制の制定」, 「ジュリスト」 1295号(2005. 8); 近藤光南·志谷匡史, 「改正 株式會社法 I ~ IV」, 弘文堂, 2005 등 참조.

지급지연등방지법(이하 '하청법'이라 함)'과 '하청중소기업진흥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이 있다. 하청법은 원사업자(親事業者)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수급사업자(下請事業者)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이다. 또한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은 하청중소기업자의 경영기반의 강화를 위해 원사업자에 대해 '진흥기준'을 제시하는 등 하청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 아울러 2009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관리에 관한 임무를 위배하거나, 복제금지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소각해야 할 것을 소각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⁵⁾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은 법률 외에도 경제산업성,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각종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고 있어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i) 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진흥기준'의 제정, (ii) 중소기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중소사업자 거래공정화추진 프로그램'의 제정, (iii)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바람직한 기업간 거래 사례(Best Practice)' 보급 및 (iv) 하청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계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⁶⁾

(2) 하청대금지급지연등방지법

가. 적용범위 및 대상

하청법은 원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하청사업자에게 책임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발주 후에 하청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청법은 적용대상이 되는 하청거래의 범위를 (i)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총액 및 (ii) 거래의 내용에 따라 정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거래의 발주

4) 公正取引委員會・中小企業廳, 「ポイント解説 下請法」, 2007, 1面.

5)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関す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方向性について」, 2009 참조.

6) 經濟産業省・中小企業廳, 「下請取引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で競争力をつける-社内體制整備のすすめ-」, 2009 참조.

자(원사업자)를 자본금구분에 의해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하청거래에 관한 원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표 1] 하청법 적용대상(제2조 7호)

적용대상		위탁거래의 내용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자본금 3억엔 이상	자본금 3억엔 이하의 회사나 개인사업자	- 물품의 제조 - 물품의 수리
자본금 1천만엔 이상 3억엔 이하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의 회사나 개인사업자	- 프로그램의 작성 - 운송·물품의 창고보관·정보 처리
자본금 5천만엔 이상	자본금 5천만엔 이하의 회사나 개인사업자	-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의 제 작, 상품디자인, 제품의 취급 설명서, 설계도면 등의 작성 등 프로그램 이외의 정보성과 물의 작성
자본금 1천만엔이상 5천만엔 이하	자본금 1천만엔 이하의 회사나 개인사업자	- 건물이나 기계의 유지, 콜센터 업무 등 고객서비스 대행 등 운송·물품의 창고보관·정 보처리 이외의 서비스 제공

동 법의 적용대상은 제조위탁, 수리위탁, 정보성과물작성위탁 및 역무제공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조위탁은 물품(동산에 한정, 건물 등은 제외) 판매 또는 제조를 청부받은 사업자가 규격, 품질,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상세하게 지정하고 다른 사업자에 물품의 제조 및 가공 등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⁷⁾ 수리위탁은 물품수리를 청부받은 사업자가 그 수리를 다른 사업자

7) 구체적인 유형은 ① 물품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이나 부품 등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물품제조를 청부받은 사업자가 그 물품이나 부품 등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물품수리를 행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④ 자사에서 사용·소비하는 물품을 사내에서 제조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이나 부품 등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에게 위탁하거나, 자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자사에서 수리하는 경우에 그 수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⁸⁾ 또한 정보성과물작성 위탁은 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각종 디자인 등 정보성과물의 제공이나 작성을 행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그 작성 작업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⁹⁾ 여기서 정보성과물이란 프로그램, 영상이나 음성, 음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문자, 도형, 기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등을 말한다(제2조 5호). 아울러 역무제공위탁이란 운송이나 건물유지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행하는 사업자가 청부받은 역무의 제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청부받은 건설공사는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건설공사의 하청에 대해서는 건설업법에서 하청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 자회사를 통한 거래(터널회사)의 규제

하청법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면 하청법의 적용이 되는 사업자가 자본금 3억엔 이하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를 통하여 위탁거래를 행하는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되면 그 자회사는 하청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모회사가 의결권이 과반수에 해당하는 등 임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등에 대해서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및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위탁액 또는 수량의 50%이상을 재위탁하는 등 상당부분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등이다.

다. 원사업자의 의무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8) 구체적인 유형은 ① 물품수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청부받은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와 ② 자사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자사에서 수리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 수리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9) 구체적인 유형은 ① 정보성과물을 업으로서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정보성과물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② 정보성과물 작성을 업으로서 청부받는 사업자가 그 정보성과물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③ 자사에서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의 제조나 수리,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제공을 위탁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주문의 내용, 하청대금, 지급기일, 지급방법 등을 명기한 서면(주문서)를 교부해야 한다(제3조). 아울러 하청대금 지급기일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정해야 하며(제2조의2), 지급기일까지 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급을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수에 따라 미지급액에 연 14.6%를 곱한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제4조의2).

라. 원사업자의 금지행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하청법은 원사업자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 수령거부의 금지(제4조 제1항 1호)

원사업자는 납품된 물품 등을 주문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나) 하청대금 지급지연 금지(제4조 제1항 2호)

원사업자는 지급기일에 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등의 사내검사를 위해서나 사내의 사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하청대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하청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다) 하청대금 감액의 금지(제4조 제1항 3호)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발주시에 정한 금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직접 금액인하뿐만 아니라 참조금 요구 등 감액의 명목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금액의 많고 적음이나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다. 구체적으로 단가인하에 합의한 경우, 합의 전에 이

미 발주한 물량에 대해서도 신단가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어음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무수수료로서 하청대금으로부터 자사의 단기조달금리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¹⁰⁾

(라) 반품의 금지(제4조 제1항 4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할 수 없다.

(마) 부당금액결정 금지(제4조 제1항 5호)

원사업자는 동종, 유사한 위탁거래의 경우에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청금액을 부당하게 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예산단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통상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청대금을 정하는 행위 및 다량 발주한 것을 전제로 견적을 낸 경우, 그 견적가격으로 소량발주를 하면 통상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뒀어도 불구하고 그 견적가격의 단가를 소량발주에도 적용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¹¹⁾

(바) 물건의 구입강제·역무의 이용강제 금지(제4조 제1항 6호)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사제품, 보유하고 있는 잉여재료 등 자신이 지정한 물건을 하청사업자에게 강제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역무를 강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사) 보복조치의 금지(제4조 제1항 7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량을 감소시키거나, 거래를 정리하는 등의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0) 公正取引委員會・中小企業廳, 前掲書, 15面.

11) 上掲書, 16面.

(아) 유상지급원재료 등의 대가 조기결제 금지(제4조 제2항 1호)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유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을 사용한 수급사업자가 제조 또는 수리한 물품의 하청대금 지급기일보다 빠른 시기에 그 원재료 등의 대금지급을 요구하거나 하청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자) 할인 곤란한 어음의 교부금지(제4조 제2항 2호)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위해 하청대금 지급기일까지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차) 부당한 경제상 이익제공요청 금지(제4조 제2항 3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카) 부당한 급부내용 변경·수정 금지(제4조 제2항 4호)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책임없는 사유로 발주내용의 변경을 행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수령한 후 내용수정을 통해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서면조사 및 출입검사 (제9조)

공정위 및 중소기업청은 하도급거래가 공정한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제 동 조항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 하에 하청사업자와 거래에 관한 조사를 행하고 있다.¹²⁾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존하고 있는

12)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1년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되었다. 中小企業廳, “下請事業者との取引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 2011.6.1.

거래기록의 조사 및 출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권고·공표(제7조)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하청법에 위반한 경우 이를 멈추고 원상회복할 것(감액분 및 지연이자 지급 등)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공표할 수 있다. 하청법을 위반한 원사업자가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위의 권고를 행하지 않는다.¹³⁾ 구체적인 사유는 (i)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당해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ii) 당해 위반행위를 이미 중지한 경우, (iii)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미 취한 경우, (iv)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우 및 (v)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지도에 전면적으로 협력한 경우 등이다.

(다) 벌칙

일본 하청법의 경우 서면교부를 행하지 않은 경우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허위의 서류나 전자기록을 작성한 경우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제10조). 또한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타한 자는 5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1조), 이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 동일한 형을 부과할 수 있다.(제12조)

3. 하청중소기업진흥법

(1) 의의

13) 公正取引委員会, “下請法違反行為を自發的の申し出た親事業者の取扱いについて”, 2008.12.

하청중소기업진흥법은 하청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며 하청중소기업협회에 의한 하청거래 알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하청관계를 개선하고 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주적으로 그 사업을 운용하고 아울러 그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한다.

(2) 진흥법의 주요내용

가. 진흥기준의 제정

경제산업대신은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¹⁴⁾ 포함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제3조).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진흥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도 및 조언을 행할 수 있으며(제4조), 지도 및 조언의 주체는 수급사업자 및 원사업자의 사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이다(제13조 1항). 경제산업성은 동 규정에 근거하여 2003년 11월 1일자로 진흥기준을 제정하였다.

나. 진흥사업계획의 승인

수급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협동조합 등이 원사업자의 협력을 얻어 계획을 작성하여 국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행하는 경우, 금융상의 지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원사업자 및 특정하청조합 등은 당해 원사업자의 발주분야의 명확화, 당해 특정하청조합 등의 구성원인 수급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의 도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기술향상 및 사업 공동화 등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에 대한 하청중소기업진흥사업계획

14) 구체적으로 ①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이나 정보성품의 품질과 성능 또는 서비스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원사업자 발주분야의 명확화 및 발주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수급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의 도입, 기술 향상 및 사업의 공동화에 관한 사항, ④ 대가결정의 방법, 납품 검사의 방법 등 거래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수급사업자의 제휴추진에 관한 사항 및 ⑥ 기타 하청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다. 하청기업진흥협회의 설치

국가 및 도도부현은 일반 사단법인 또는 일반 재단법인으로서 일정한 업무를¹⁵⁾ 수행하는 하청기업진흥협회에 대해 하청거래 원활화를 촉진하고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그 업무에 관해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행하는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부정경쟁방지법

(1)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노하우를 도용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동 법은 2009년에 의미있는 개정이 있었다. 동 개정에 의해 영업비밀침해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종전의 영업비밀침해죄의 경우 '부정한 경쟁의 목적¹⁶⁾'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에서 '부정한 이익획득을 목적¹⁷⁾'으로 하거나 또는 그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¹⁸⁾'으로 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21조 제1항)

종래의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해외정부 등에 영업비밀을 알려주는 행위나 보유자를 단순히 해하려는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기재하

-
- 15) 구체적으로 ① 하청거래알선을 행하는 것, ② 하청거래에 관한 고충 또는 분쟁에 대해 상담하고, 그 해결에 대한 알선 도는 조정을 행하는 것 및 ③ 하청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사 또는 정보의 수입 및 제공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16) 부정한 경쟁의 목적이란 자기를 포함한 특정 경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놓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침해자가 경업관계에 있는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② 침해자가 특정 경업자에게 공시하는 경우, ③ 특정 경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놓이도록 하기위해 침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시하는 경우로 제한되었다.
- 17) 공서양속 또는 신의칙에 위반하는 형태로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말한다.
- 18)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신용의 실추 등 유형무형의 부당한 손해를 가할 목적을 말한다.

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경우도 영업비밀침해죄에 포함된다. 또한 종전 영업비밀침해죄의 경우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법은 일정한 방법¹⁹⁾으로 영업비밀을 영득하면 바로 처벌대상이 된다(제21조 제1항 3호)

(2) 부정경쟁방지법 개정과 하도급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원인이 된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유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노하우 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²⁰⁾ 중소기업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경우에 대기업과 제휴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이 아이디어를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제품화하거나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관리에 관한 임무를 위반하여 복제금지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 소각해야 할 자료를 소각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등이 새롭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¹⁾

5. 가이드라인 등의 제정

(1) 중소기업 거래공정화 추진 프로그램

가. 의의

19) 구체적으로 ① 영업비밀기록매체 등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을 횡령하는 것 ②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 기재나 기록에 대하여 또는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에 대하여 그 복제를 작성하는 것 및 ③ 영업비밀기록매체등의 기재 또는 기록에 대해 소각할 것을 소각하지 않거나 당해 기재 또는 기록을 소각한 것으로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20)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關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方向性について”, 2010.2, 6面.

21) 經濟産業省, “下請事業者への配慮等について”, 2010.11, 2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2009년 11월 18일에 ‘중소사업자 거래공정화 추진 프로그램(中小事業者取引公正化推進プログラム)’을 추진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소매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 하주와 거래하는 물류사업자 등의 중소기업자가 거래대상 사업자, 특히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취급을 받기 쉬운 중소기업자 전반의 거래공정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나.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중소기업자 입장에서의 상담 및 광고를 위한 이동 상담회 개최 및 중소기업자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할 통한 상담 개최 및 대기업과 원사업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강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산업성은 매년 11월에 원사업자 및 관계사업자단체에 대해 하청법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원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 3월 11일에 공정거래위원장 및 경제산업성대신 명의로 662개 관계사업단체에 하청법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였다.

그 외에도 하청거래 이외에 중소기업자의 거래공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중점적이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데스크 포스의 설치와 하청법상 문제가 많은 업종 등에서의 감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²²⁾

그 밖에 과거 권고사건에 관한 추적조사도 이루어졌다. 2005년 권고사건 2건, 2006년 권고사건 1건 및 2007년 권고사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해 권고 후 원사업자 4사에 의한 하청법 준수상황을 추적조사 하였으며, 조사 결과 권고 후 하도급거래시 문제발생을 막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문제가 재발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2) 과거 위반이 많았던 도로화물운송업, 자동차소매업 및 일반기계기구제조업 등 3업종과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 전기기계기구제조업과 운송용기계기구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였다.

(2) 하청적정거래등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가. 의의

중소기업청은 업종별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간의 '바람직한 기업간 거래 사례(Best Practice)'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총 15개 업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책정,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업종은 ① 소형재(素形材)산업, ② 자동차산업, ③ 산업기계·항공기 등, ④ 섬유산업, ⑤ 정보통신기계산업, ⑥ 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 산업, ⑦ 광고업, ⑧ 건설업, ⑨ 트럭운송업, ⑩ 건축재료, 주택설비산업, ⑪ 방송콘텐츠, ⑫ 철강산업, ⑬ 화학산업, ⑭ 종이·종이가공품산업, ⑮ 인쇄산업 등으로 구분된다.²³⁾

나.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은 바람직한 기업간 거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재료 가격 등의 인상분을 적절하게 거래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원재료 가격의 인상에 따라 가격협의를 분기마다 빈번하게 실시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정기적인 가격교섭시에 견적을 낸 시점과 비교하여 원재료가격이 변동분을 원사업자가 보전하는 '차액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또는 가이드라인, 업계요망서, 원재료가격추이표 등에 근거하여 발주측을 납득시키는 가격교섭이 행해진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하청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

가. 의의

중소기업청과 경제산업성은 하청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내 컴플라이언스 체제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등이 하청법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주요 원인으로 하청법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

23) 최초로 2007년에 8개 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며, 이후 2008년에 '트럭운송업'과 '건축재료·주택설비산업'이 추가되고 2009년에 '방송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추가되었으며, 2010년에는 철강산업, 화학산업, 종이·종이가공업, 인쇄산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되었다.

히 이해하지 못하고', '업계의 악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사내의 체크시스템이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²⁴⁾ 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적정거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및 종업원의 하청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하다는 인식하여 하청법의 준수를 위해서는 자사의 업무특성에 따라 하청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사내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4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에서는 하청법의 이해와 사내에의 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단계로 하청법 준수를 위한 사내체제 정비를 위해 업무규정 및 매뉴얼 등의 작성 필요성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3단계로 하청법 준수를 위한 조직체계에 대한 체크를 위한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업무감사 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제4단계에서 과제정리와 공유화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III. 일본 중소기업정책의 시사점

1. 하도급거래에 대한 기본관점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대해 갑과 을의 관계에 있는 대기업(대규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수급사업자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원사업자가 동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 벌금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만이 수급사

24) 經濟産業省・中小企業廳, “下請取引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で競争力をつける”, 2010. 2面.

업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재수단의 강화는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도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하도급거래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문제가 아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쟁제한적 행위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하청법의 경우 자본금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판단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업자의 노하우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비밀침해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대등한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률이다. 즉, 일본은 위와 같은 행위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계약관계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상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이나 내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사전예방중심의 규제

일본의 경우 하청법에서 하도급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우리나라의 하도급관계를 규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일본의 하청법은 그 내용이 유사하며,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수령거부의 금지, 하청대금의 감액금지, 반품금지, 할인 곤란한 어음의 교부금지) 등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하청거래 공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후적인 분쟁해결 및 강력한 처벌을 통한 공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에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도입하여 분쟁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를 통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분쟁발생의 사전적 예방조치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청법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권고 및 지

도 중심의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사업자가 하청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과 재발방지조치의 실시를 권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벌금부과)은 없으며, 서면교부의무 불이행, 허위보고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사후적 제재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살펴본 (i) 중소기업자 거래공정화 추진 프로그램이나 (ii) 하청적정거래등의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및 (iii) 하청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구축등이 모두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과잉규제에 대한 검토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규정 마련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유용하는 경우 중복제재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과징금 부과(제25조의3 1항 3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제30조 1항 1호)의 부과 및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의 손해배상(제35조 2항)이 중첩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일본 하청법의 경우 절차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두고 있을 뿐,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하청법과 관련하여 과징금제도의 도입등과 관련한 논의는 보이지 않으며, 2005년 공정거래법 개정당시 과징금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제재수단 도입에 대한 일본의 신중한 태도를 알 수 있다. 당시 일본의 경우 독점금지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율을 인상하고 가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중처벌 및 과잉처벌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당시 공정위는 재량성을 배제하고 금지규정의 실효성 확보의 관점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매상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과하는 행정상 조치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부당이득으로 의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징수한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변경하여 위반행위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후생의 손실을 부담 또는 보상한다는 관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채택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재금제도(공정위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악질성, 유책성 등에 따라 재량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우선 ① 지나치게 고액이 되어 죄형균형의 원칙에 반할 염려가 있으며, ②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응보등의 관점으로 양형이 결정되면 형사벌과의 기능분화가 불명확하다는 점, ③ 제재금으로 보는 경우 그 법적성격으로 인해 위반행위의 고의, 과실 등의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사건처리 절차가 번잡해 질 수 있다는 점 및 ④ 형사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²⁵⁾

물론 위반자에 부과하는 경제적 불이익의 수준이 부당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제재적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제제기능은 위반행위를 개시한 날로부터 위반행위에 관련된 매상액의 일정비율을 기계적으로 징수하고, 위반행위가 종료하면 종료일 이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디까지나 장래에 향하여 위반행위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또한 사회적 공정을 확보하는 등의 행정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위반사실의 범정(犯情), 범행후의 정황 등을 평가하여 과하는 형사벌과는 그 취지나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과징금제도는 위반행위에 의해 생긴 손실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상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손실이란 민법상 부당이득·손해의 개념과 같은 개별적으로 입증되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손해배상제도와도 양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경우 이중처벌 및 과잉처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이러한 이중처벌의 문제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향후 제도를 운영함

25) 獨占禁止法研究會, “獨占禁止法研究會報告書”, 2003 참조.

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과 공생을 위한 노력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제를 통한 인위적인 조정은 또 다른 문제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즉, 적절한 수준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그 활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곽관훈, “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제19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10.
- 김창범, “법령심사과정에서 본 경제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 워크샵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7. 4. 25.
- 법무부, 「2004 법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2004.
- 獨占禁止法研究會, “獨占禁止法研究會報告書”, 2003.
- 經濟産業省・中小企業廳, “下請取引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で競争力をつける”, 2010.

- 經濟産業省, “下請事業者への配慮等について”, 2010.11.
-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関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係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方向性について”, 2010.2.
- 公正取引委員會, “下請法違反行爲を自發的の申し出た親事業者の取扱いについて”, 2008.12.
- 中小企業廳, “下請事業者との取引に関する調査について”, 2011.6.1
- 經濟産業省・中小企業廳, 「下請取引コンプライアンス・プログラムで競争力をつける-社内體制整備のすすめ-」, 2009.
- 産業構造審議會 知的財産政策部會 技術情報の保護等の在り方に関する小委員會, 「營業秘密に関する刑事的措置の見直し方向性について」, 2009.
- 公正取引委員會・中小企業廳, 「ポイント解説 下請法」, 2007.
- 江頭憲治郎 外, “特輯會社法制の制定”, 「ジュリスト」1295号, 2005. 8.
- 近藤光南・志谷匡史, 「改正 株式會社法 I ~ IV」, 弘文堂, 2005.
- 高田 剛 外, 「非公開會社のための新會社法」, 商事法務,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n Japan

Kwak, Kwan-Hoon

Professor, College of Law, Sun 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national policy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is to sharpen the competitiveness of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by consolidating the win-win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o attain their simultaneous growth by putting an end to the polarization of conglomerat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ith the aim of laying the foundation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may develop and implement policy steps aimed at proliferating a contract model under which commissioned enterprises support commissioned enterprises to attain their joint agreed goals, including the cost-cutting, etc. and both commissioned and commission enterprises jointly share the result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ill take a look at the issue about the policy abou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Japan, specially to focus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n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lication about the policy and law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Korea.

Key Words :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over regulation, exemplary damages

